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20호 2014. 4. 2.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4 - 281호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4 - 281호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4. 3. 31.

정 선 군 수

1.**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13년에는 재난이 5회 발생하여 피해는 559건 1,092백만원이며, 복구는 404건 1,84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대설 재난은 1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6건, 145백만원 이며 복구는 3건, 27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강풍재난은 2회 발생하여 피해는 128건, 30백만원 이며 복구는 128건, 1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또한 저온 재난은 1회 발생하여 피해는 1건, 1백만원이며 복구는 1건 0.5백만원이 소요되었고
 - 호우 재난은 1회 발생하여 피해는 424건 916백만원이며 복구는 272건에 1,808백만원 소요되었으며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 우리 군의 재난발생현황은 강풍이 2회로 빈도는 높으나 호우 재난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3개실과 97명으로 5년 평균보다 6명 증가하였고, 지난해(12년)와 인원변동은 없습니다.(자연재난, 전염병, 가축전염병)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10종으로 94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12개소 감소하였고, 지난해(12년) 보다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설치가 많이 이루어진 결과며 2009년 이후는 기존 설치지역외 추가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 결과입니다.
- 방재담당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은 11회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방재담당 공무원 교육으로는 크게 재해복구 및 지진, 재난관리자 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고 자율방재단에 대하여는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발대식 포함 교육 및 정선군 및 각 읍면 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안전모니터 봉사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3회 실시하는 한편 안전모니터 봉사단 강원도 연합회와 합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재난관리 관련 홍보 활동으로는 안전점검의날 행사 및 캠페인 시 평균 16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풍수해 및 설해, 추석 및 설, 물놀이, 및 산불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였고 언론보도(3회)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재난예경보운영, 재난안전상황실설치운영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군수),차장(부군수)를 중심으로 통제관(기획감사실장), 담당관(자치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 긴급구조통제단(정선소방서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반으로는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여 해당부서 필요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13년도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조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여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총236개소로 시설물이 94개소, 건축물이 14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A등급 99, B등급 114, C등급22개소이며 중단된 건축공사장을 재난위험시설 D등급(1개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당부서 및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재난위험시설(중단된 공사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법 제29조에 의거 재난방지시설의 2013년 정비는 사업비 22,891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소하천, 사방시설, 농업기반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5년평균 24,427백만원 보다 1,53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2012년)대비 4,65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은 방재물자(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등)는 총 10.3(km,천매, KI)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원22개소, 보건소 19개소, 이재민 대피시설 7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는 마대(읍면별) 8,000매, 1톤마대 1,350매, 비닐 450롤, 흡수성주머니 1,350매 말뚝 900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기존 수량부족시 즉시 구입·배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장비로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산악구조차, 호버크래프트 각 1대 및 기타 구조장비 67대(개) 등 총 71대(개)를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응급복구 장비(굴삭기, 덤프) 112대, 산불진화장비 5,420점 등 총 5,603(대, 점)의 장비를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5년평균대비 187점이 증가였고 전년(2012년)대비 약 93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술인력(기능포함)은 토목, 건축, 전기 등에 41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및 특수단체의 인원은 6,469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 293백만원을 확보(100%)하였습니다.

- 2013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전체)은 1,103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전체금액(기적립액+급회적립액) 평균(1,178백만원) 보다 7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전년(2012)보다 20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10등급으로 위험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1등급이 감소하였습니다.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대상(28개) 시설 중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은 각종 장비등을 보호하고자 이중마루 및 전력통신시설에 대한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3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우수라는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욱 보완하여 재난관리 체계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단위 : 건,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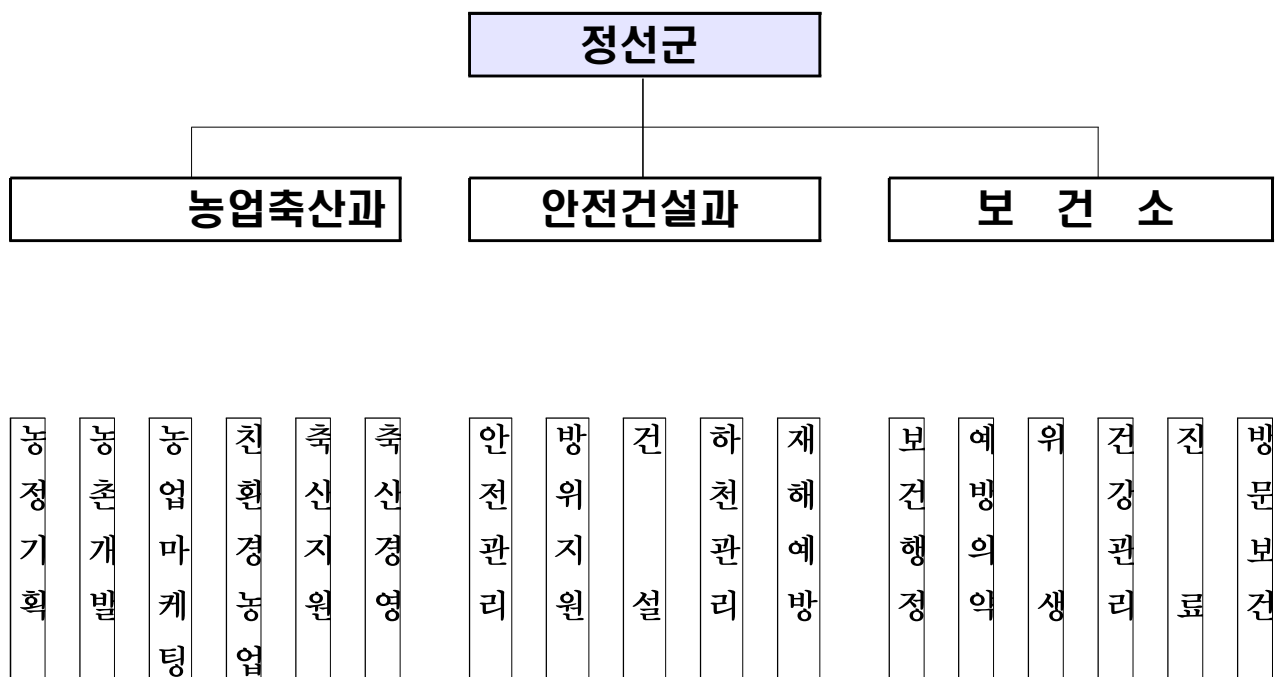
일 시	재난(피해) 원 인	피해내용(건/피해액)	복구내용(건/복구액)	추진사항
합계	5	559/1,092,320	404/1,848,328	
13.1.21	대설	-공공시설 -사유시설 6/145,008	-공공시설 -사유시설 3/27,371	- 해당없음 - 완료
13.4.09 ~ 13.4.13	강풍	-공공시설 -사유시설 3/20,625	-공공시설 -사유시설 3/7,000	- 해당없음 - 완료
13.5.24	저온	-공공시설 -사유시설 1/926	-공공시설 -사유시설 1/500	- 해당없음 - 완료
13.07.02	강풍	-공공시설 -사유시설 125/9,800	-공공시설 -사유시설 125/5,058	- 해당없음 - 완료
13.07.11 ~ 13.7.15	호우	-공공시설 90/857,583 -사유시설 334/58,378	- 공공 시설 69/1,687,571 - 사 유 시 설 203/120,828	- 완료 - 완료

※ 국고보조 및 자체복구 현황임.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 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 : 자연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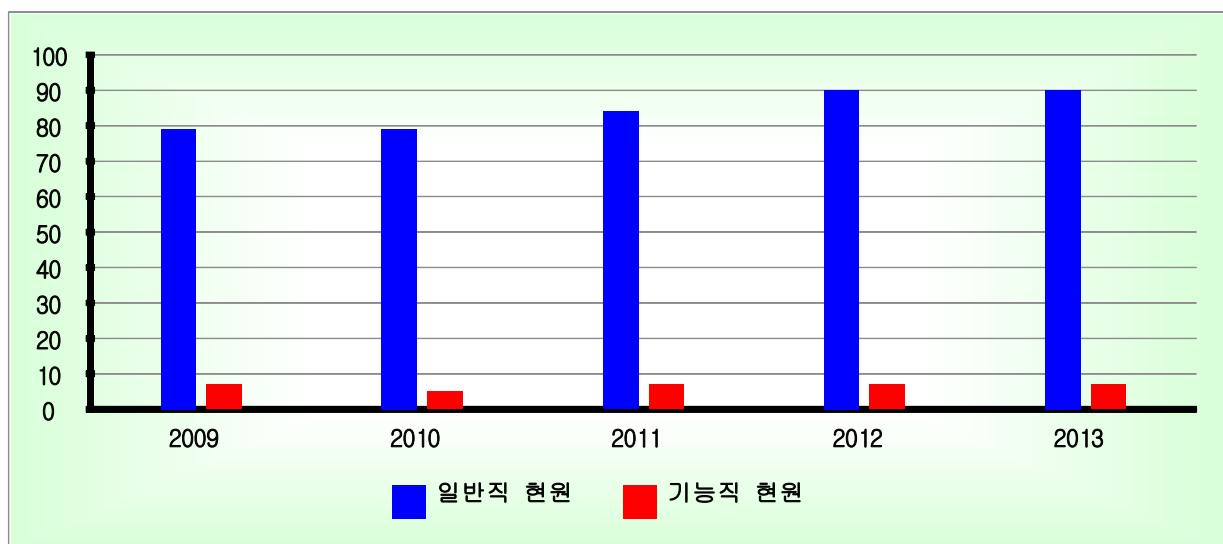
나. 정원

(2013년)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05	94		4	20	36	26	8	7	4
	현원	103	90		4	29	40	11	6	7	6
농 업 축산과	정원	24	20		1	7	6	4	2	1	3
	현원	23	20		1	8	7	2	2		3
안 전 건설과	정원	17	15		1	5	8		1	2	
	현원	16	12		1	5	3	1	2	4	
보건소	정원	64	59		2	8	22	22	5	4	1
	현원	64	58		2	16	30	8	2	3	3

◇ 연도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직 현원(인원)	79	79	84	90	90
기능직 현원(인원)	7	5	7	7	7



- － 일반직 및 기능직 현 인원의 증감원인은 갈수록 다양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및 배치 등이 원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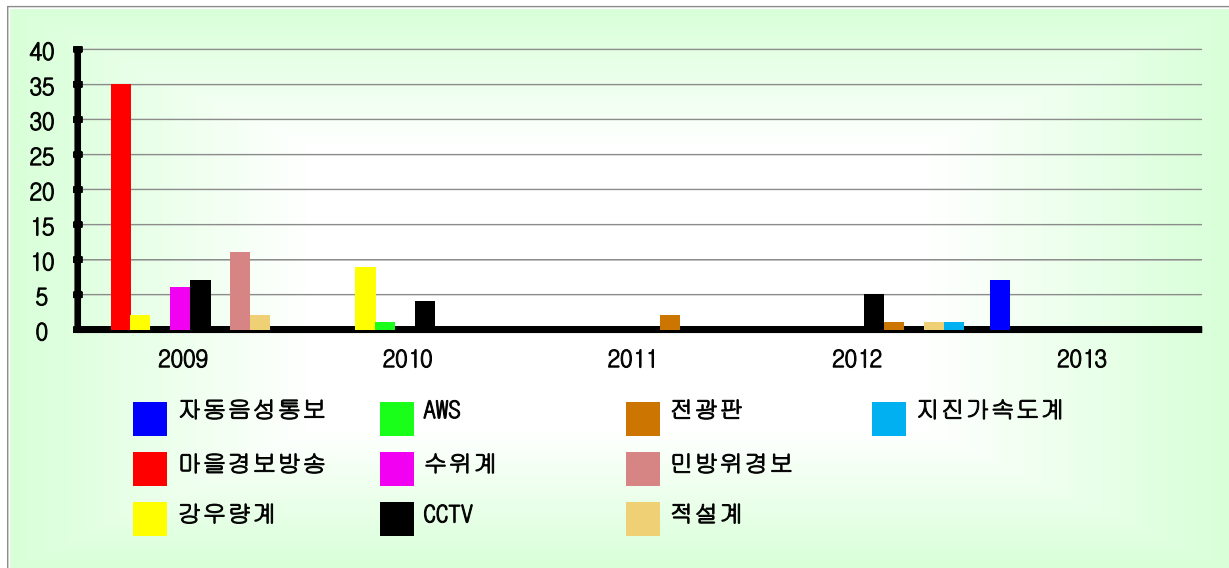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	덕산1교외 6개소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5	정선읍 가수리외 34개소
자동우량관측장비	11	정선군청외 10개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	정선읍 북실리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정선2교외 5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6	역전배수펌프장외 15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	임계면사무소외 2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정선군청외 10개소
적설계	3	임계면 백북령외 2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	정선군청

◆ 연도별 비교

구 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	—	—	—	—	7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5	35	—	—	—	—
자동우량관측장비	11	2	9	—	—	—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	—	—	—	1	—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6	—	—	—	—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6	7	4	—	5	
재해문자전광판	3	—	—	2	1	—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11	—	—	—	—
적설계	3	2	—	—	1	—
지진가속도계측기	1	—	1	—	—	—

※ 정선군 자체 설치 현황임.



- 재난정보체계 구축은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한 수해 시 정보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경보시설 설치하였고
- 설치 후 유지관리를 통한 경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 및 필요지역에 대한 신규설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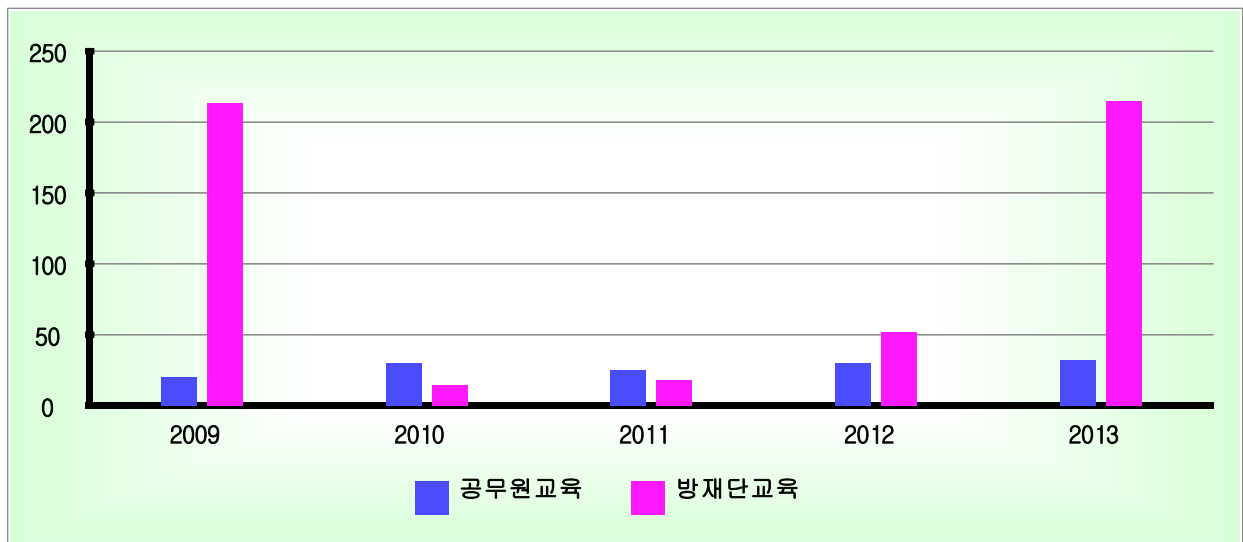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제1기 지진대응시스템 과정	13.3.11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1	
재해예방사업담당공무원 교육	13.3.26	소방방재청	2	
재해복구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13.05.28	소방방재청	2	
여름철 사전대비 담당자 교육	13.05.29	정선군	24	
제2기 재난관리자 과정	13.06.17~18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1	
제1기 재난관리 신규과정	13.11.18~22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1	
제2기 저수지 댐안전관리과정	13.12.03~06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1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3.4.11~12	강원도 인재개발원	2	재해대비 민간역량강화	강원도	
13.08.12	정선군청	202	위촉장 수여 및 교육	정선군	
13.10.04	강원도청	9	강원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강원도	
13.10.24	화천군	2	강원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회의	강원도	

◇ 연도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20	30	25	30	32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213	14	18	52	215



- 방재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은 기관교육 및 자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종류, 내용 및 참석율 등에 따라 인원의 증감이 나타나고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발대식과 각 읍면 단장 및 정선군 단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으로 인하여 인원의 증감 원인으로 작용.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3.04.09	천안	2	안전모니터봉사단워크숍	안전행정부	
13.07.11	천안	2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교육	안전행정부	
13.11.05	정선군청	67	역량강화 교육	강원도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	제보실적	처리실적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401	110	110	—	—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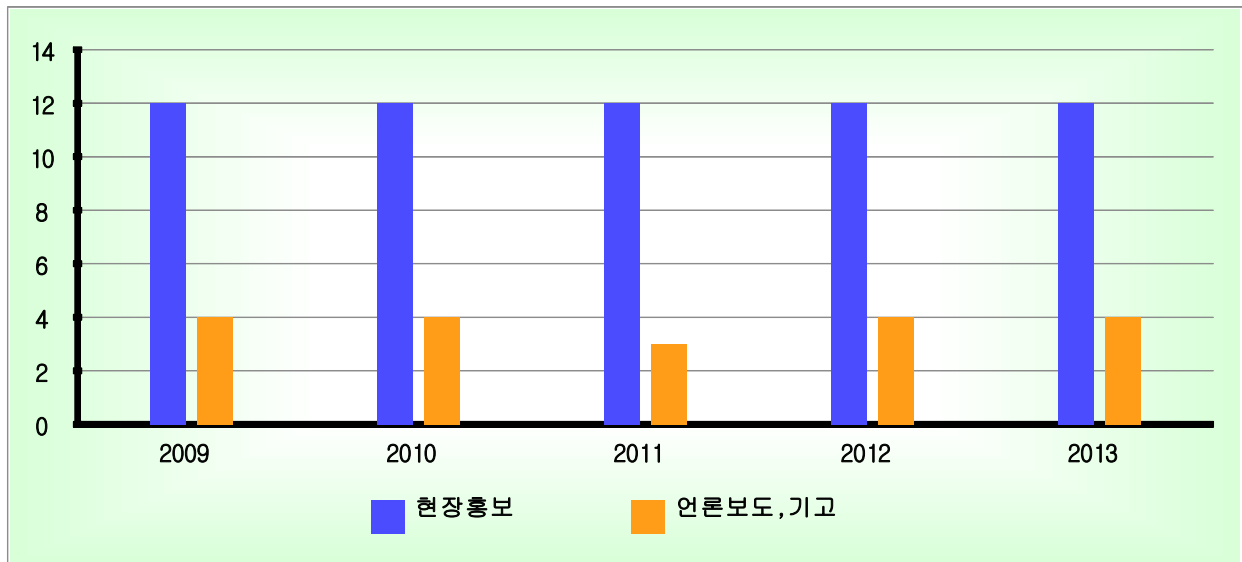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날 행사	설해대비 안전한 겨울나기 홍보 등	13.1.17	정선군	210	
2	안전점검의날 행사	안전한 설명절나기 홍보 등	13.2.07	정선군	200	
3	안전점검의날 행사	행빙기 및 산불예방 홍보 등	13.03.27	정선군	210	
4	안전점검의날 행사	행락철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	13.04.05	정선군	180	
5	안전점검의날 행사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	13.05.07	정선군	200	
6	안전점검의날 행사	축제장 가스전기 안전 홍보 등	13.06.04	정선군	380	
7	안전점검의날 행사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	13.07.05	정선군	150	
8	안전점검의날 행사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등	13.08.05	정선군	70	
9	안전점검의날 행사	안전한 추석나기 홍보 등	13.09.12	정선군	100	
10	안전점검의날 행사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예방 홍보	13.10.04	정선군	150	
11	안전점검의날 행사	불조심 강조의달 홍보 등	13.11.08	정선군	100	
12	안전점검의날 행사	겨울철자연재난대비 홍보 등	13.12.04	정선군	100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설날대비 안전점검의 날행사	- 설날대비 안전점검 홍보	13.02.08	강원일보	
2	해빙기 및 산불예방홍보 안전점검의날 행사	- 해빙기 및 산불예방 홍보	13.03.28	강원일보	
3	추석대비 안전점검의날 행사	- 추석대비 안전점검 홍보	13.09.12	강원일보	
4	재난역량강화 교육	- 재난역량강화 교육	13.11.06	강원일보 참뉴스	

◆ 연도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4	4	3	4	4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은 매달 진행하는 행사로써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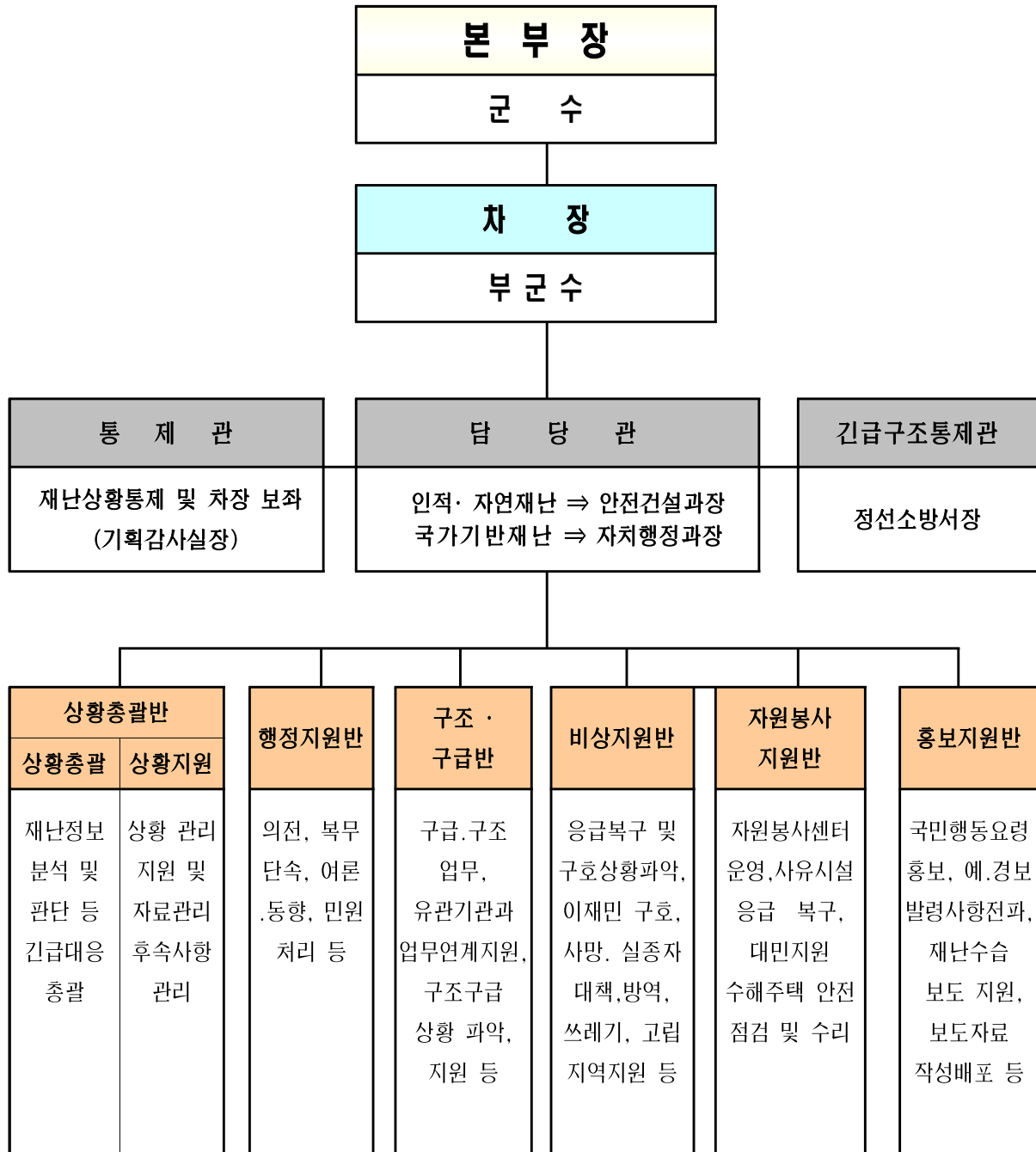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군수 • 위 원 : 11인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군수 • 위 원 : 11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법 제75조	• 위원장 : 민간 • 위 원 : 12인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조정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점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군수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군수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의 배분 및 조정
재난 예·경보 운영	같은 법 제38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의 확인 • 재난관련 언론보도사항 확인·보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상황실장 및 반원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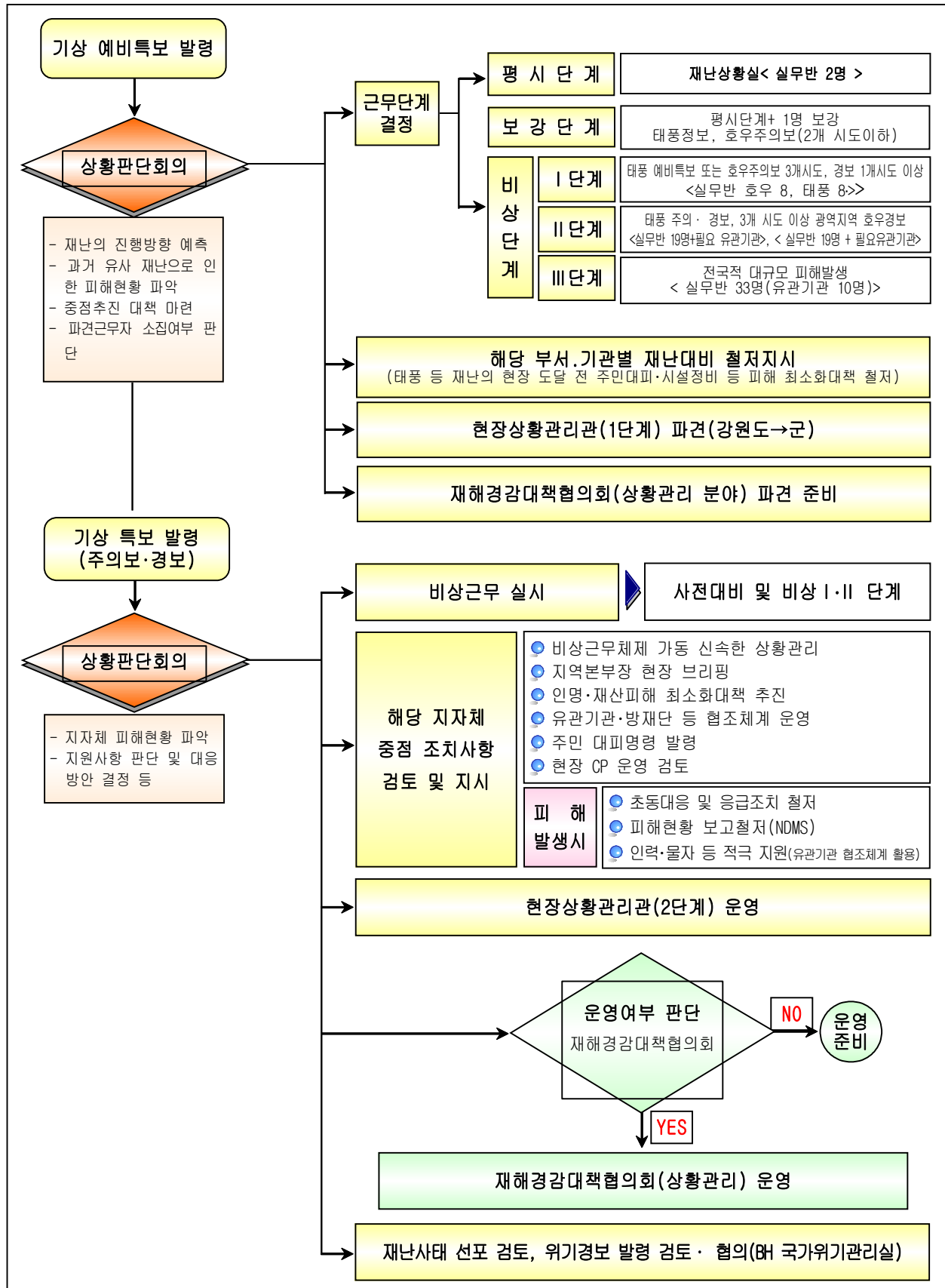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7조 내지 제8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종합상황실 (통제관)	인적·자연 재난		안전 건설과장	1. 차장보좌, 비상단계 상황관리 총괄 2.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국가기반 재난		자치 행정과장				
총괄 상황반	반장			상황관리 실무총괄			
	상황 총괄	재난· 재해	재해예방 담당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2. 재난정보 분석 및 대피명령 3. 재난 피해지역 긴급복구 지원 4. 유관기관 협조 및 정보공유 체계구축 5.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6.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관리, 지원 7.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국가 기반 재난 (전쟁 등)	행정 담당				
	상황 지원	안전관리담당 (유형별 재난책임부서)		1. 재난징후 및 대응실시간 기록 관리 2. 주요인사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상황근무자 후생 복지 4. 대규모 공사장(특정관리지역) 점검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미담사례 등 확인 6. 방송·언론 정보제공, 모니터링 및 정리 7.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분석			
행정지원반			반장	행정지원 총괄			
			반원	1. 주요인사(VIP, 국무총리, 중앙·도대책본부장 등) 현장방문시 의전 2.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3. 현장상황지원관 파견, 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지원 4.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5. 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지원			
구조구급반			반장	구조구급 총괄			
			반원	1. 구급·구조업무 전담부서인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 재난안전 대책본부 상주근무 2. 유관기관 근무자와 재대본간 원활한 업무연계 지원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원 4. 구조구급관련 네트워크 가동(장비, 인력) 5. 구조구급 상황파악, 지원 등 6. 긴급구조통제반과 현장응급의료소간 업무연계 지원			

구 분		담 당 업 무
비상지원반	반 장	비상지원 총괄
	반 원	1.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 및 지원 2.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재해 구호물자 배부, 구호단체 협력 4.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응급지원 협력 5.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6. 대규모 농.축산시설 운영자 비상연락망 점검 7. 농축산 기반시설 점검.피해상황 파악 8. 수해 쓰레기처리 시설.인력.장비 점검 9. 산사태 위험지역 점검.피해상황 파악.조치 10. 주요 도로.하천 사전 점검
	반 원	11.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2. 저수지, 양.배수장 재해관련 수리시설 점검.조치 13. 주요 시설물 점검, 상습침수 재해취약지역 피해상황 파악.조치 14. 기동방역반 운영 15. 응급의료체제 가동, 감염병 대군민 홍보 16.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17.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원봉사지원반	반 장	자원봉사지원 총괄
	반 원	1.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홍보지원반	반 장	홍보지원 총괄
	반 원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풍수해 재난·재해 대응 개념도



□ 비상근무 기준

구 분	근 무 기 준		인 원	근 무 조 편 성
평상시 (상시대비 단계)	태풍	◆ 24시간 상황관리	2명	◆ 재난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 재난방재과 2, 당직근무자 3 (주간 상황실, 야간 당직실)
	호우 대설			
보강시 (사전대비 단계)	태풍	◆ 태풍정보 발표시	3명	◆ 재난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 재난상황실 내근근무자 1명 * 건설방재과 2, 자치행정과 1
	호우 대설	◆ 호우주의보 2개 시·도 이하 * 서해 5도, 흑산도·홍도, 울릉도·독도, 제주산간 등 도서·산간지역 특보제외		
비 상 1단계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9명	◆ 총괄지휘 : 건설방재과장 ◆ 상황총괄반 : 3 ◆ 비상지원반 : 6
	호우 대설	◆ 호우주의보 3개 시·도 이상 ◆ 호우경보 1개 시·도 이상	9명	
비 상 2단계	태풍	◆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또는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발생시	17명	◆ 총괄지휘 : 부군수 ◆ 상황총괄반 : 6 ◆ 상황지원반 : - ◆ 행정지원반 : 3 ◆ 비상지원반 : 7
	호우 대설	◆ 호우경보 3개시·도 이상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발생시		
비 상 3단계	태풍	◆ 광역적 태풍·호우경보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	33명	◆ 총괄지휘 : 군수 ◆ 상황총괄반 : 6 ◆ 행정지원반 : 3 ◆ 구조·구급반 : 4 ◆ 비상지원반 : 13 ◆ 자원봉사지원반 : 3 ◆ 홍보지원반 : 3
	호우 대설			

1. 필요 유관기관(10명) :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영월기상대, 정선국유림관리소,
제8087부대 1대대, 정선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KT 정선지사, 대한적십자사 정선봉사협의회, 정선군지역자율방재단

□ 대응실무반 편성

반별	단계	비상단계(Ⅰ)		비상단계(Ⅱ)		비상단계(Ⅲ)	
		담당실과	인원	담당실과	인원	담당실과	인원
계			9		17		33
총괄지휘		안전건설과장	1	부군수	1	군 수	1
상황총괄반				(반장) 안전건설과장 자치행정과장	1	(반장) 안전건설과장 자치행정과장	1
	상황총괄팀	(반원) 안전건설과	1	(반원) 안전건설과 자치행정과	1 1	(반원) 안전건설과 자치행정과	1 1
	상황지원팀	(반원) 안전건설과	2	(반원)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	2 1	(반원)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	2 1
	소 계		3		6		6
행정지원반				(반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반원)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1 1 1	(반장)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반원)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1 1 1
	소 계				3		3
구조·구급반						(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반원) 세무회계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1 1 1 1
	소 계						4

단계 반별	비상단계(Ⅰ)		비상단계(Ⅱ)		비상단계(Ⅲ)	
	담당실과	인원	담당실과	인원	담당실과	인원
비상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축산과 도시건축과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1 1 1 1 1	(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 건 소 장 (반원)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축산과 생태환경과 보 건 소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1 1 1 1 1 1 1	(반장) 농업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안전/도시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8087부대1대대 정선교육지원청 자율방재단	1 2 1 1 1 1 1 1 1 1 1 1
	소 계	5		7		13
자원봉사지원반					(반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반원) 주민생활지원과 생태환경과	1 1 1
	소 계					3
홍보지원반					(반장) 생태환경과장 산림정책과장 (반원) 산림정책과 기획감사실	1 1 1
	소 계					3

※ 실무반 명단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잦은 변동으로 미 기입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주요임무

기 관 · 단 체	연 락 처	주 요 임 무
제8087부대1대대 (교환)	562-0113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정선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560-8112	○ 응급 수업대책 및 휴교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 학교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전력공급팀)	560-3273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 가설 ○ 필요시 재해지역 주민 안정을 위해 구간 개폐 기차단 ○ 단전지역 응급복구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구 내 임시 내전설비 설치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보강 ○ 감전예방 안내전단 배포 등 전기안전 홍보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구호복지과 (정선봉사협의회)	033-256-9512 (011-313-6039)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급식대상자가 많거나 장기화 될 경우 인근 농협급식 센터와 협의)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KT정선지사 (특별기동팀)	562-0060	○ 비상지원본부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지위통신망 지원 ○ 통신두절지역 현황 파악 ○ 통신 응급소통
정선소방서 (예방안전과)	560-6330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구급 활동 실시 ○ 이재민 수용시설 급수지원 ○ 고립지역 긴급수송대책 수립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	560-5257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재해현장경비 및 질서유지 ○ 재해현장의 교통통제, 피해지역 주민대피 ○ 실종자 수색 및 사망자 신원확인 등
영월기상대	375-1365 (033-650-0324)	○ 기상정보 제공 ○ 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자 파견
정선국유림관리소	560-5530	○ 오지대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산사태위험지 관리
지역자율방재단	010-3346-1339(단장) 011-365-4469(간사)	○ 자연재해 사전 예찰활동 실시 ○ 피해발생시 인력 및 장비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반 배치도

반 장 (560-2074)			상 황 판
상황총괄반 (560-2075)		비상지원반 (560-2079)	
행정지원반 (560-2076)		유관기관 (560-2080)	
구조구급반 (560-2077)		유관기관 (560-2081)	
홍보지원반 (560-2078)		유관기관 (560-2082)	

1.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2. 주요인사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상황근무자 후생 복지
4. 대규모 공사장(특정관리지역) 점검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미담사례 등 확인
6. 방송.언론 정보제공, 모니터링 및 정리
7.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분석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민방위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발생재난의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대처 지도	1997.09.26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2005.03.2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05.03.22	
재난예·경보 운영규정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2006.02.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2006.03.31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2013.06.05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2013.12.11	

(5)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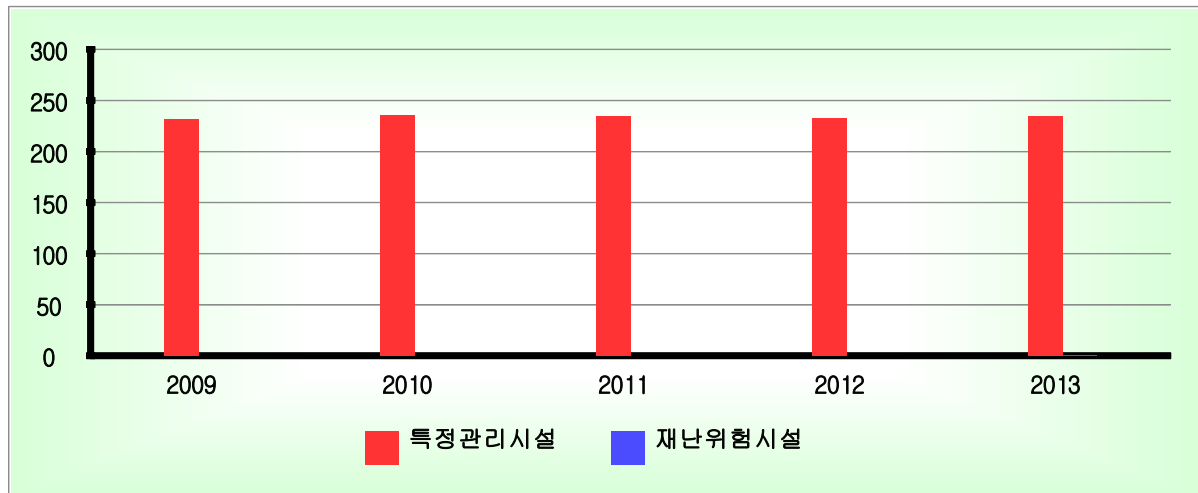
총 계	시설물						건축물							
	소 계	교량	스키 장	삭도 궤도	유원 시설	물놀이 위험 시설	소 계	공공 청사	아파 트	연립 주택	판매 시설	대형 숙박 시설	대형 목욕 탕	농공 단지
		레프팅 시설	-	-	-	-		종합 여객 시설	공연 시설	관람 시설	의료 시설	대형 건축 물	중단 공사 장	-
236	94	47	1	2	2	28	142	15	55	30	3	23	4	2
		14	-	-	-	-		3	1	1	2	2	1	-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236	235	99	114	22	1	1	-	
시설물	94	94	59	31	4	-	-	-	
건축물	142	141	40	83	18	1	1	-	

◆ 연도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등	232	236	235	233	235
재난위험시설	—	—	—	—	1



- 특정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의 증감원인은 지역개발로 인한 대형공사장의 착공 및 준공등의 영향이 작용하였고 대형공사장(건축물)의 중단등으로 인한 재난위험시설의 증감 원인이 발생.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 소 계 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건축물	고한정선 호텔2개동	중단된 공사장	민간	09.11.3	사 업 재추진	—	상하반기 점검	—

-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 중단된 공사장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하고 있으나, 해소대책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재 추진이 필요함.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2013년)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13.01.01 13.06.30	233	233	—	관리주체 해당부서	—
하반기	13.07.01 13.12.30	236	236	—	관리주체 해당부서	—

[정비실적]

(2013년)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	해	당	없	음	—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아 정비실적은 없으나 상·하반기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추진.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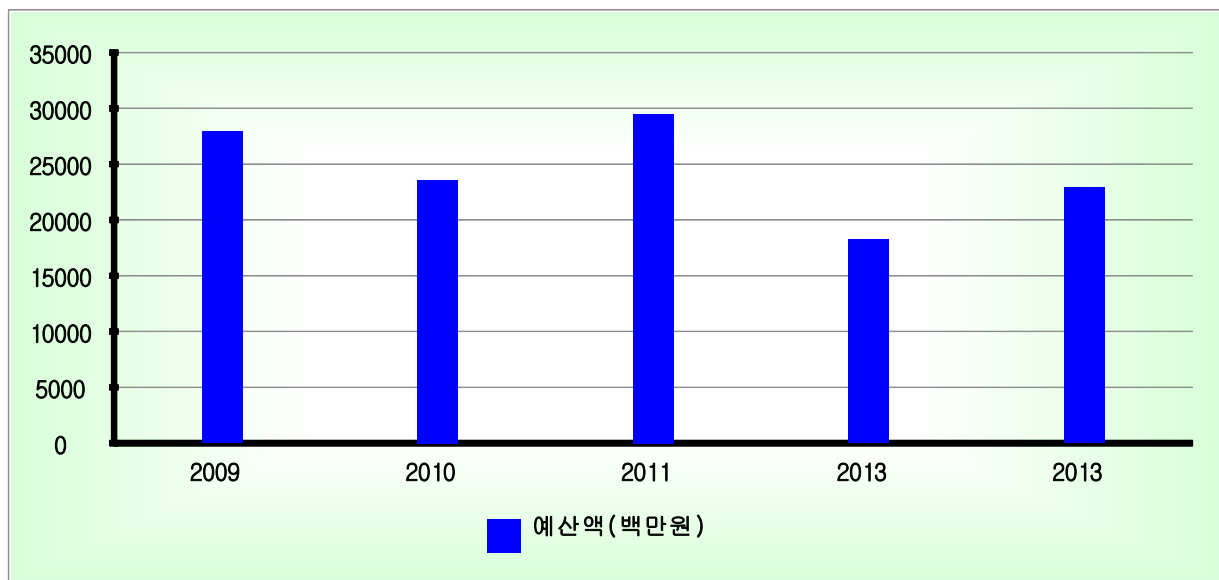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22,891	
농업기반시설정비	정선읍외 8개읍면	배수로및수리시설 설치,정비	2013년	1,370	농업시설 보호
사방댐 설치공사	북평면나전리 산188-1	그리드댐1식	2013년	203	산림재해예방
사방댐 설치공사	여량면남곡리 산146-1	그리드댐1식	2013년	255	산림재해예방
사방댐 설치공사	사북읍사북리 산138	ARC댐1식	2013년	216	산림재해예방
사방댐 설치공사	임계면임계리 산91	그리드댐1식	2013년	165	산림재해예방
사방댐 설치공사	남면 광덕리 산50-1	콘크리트댐1식	2013년	168	산림재해예방
산림재해예방 및복구사업	여량면남곡리 외 7개소	산사태복구	2013년	179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선읍,화암면 사북읍,남면	호안정비 L=2.84km	2013년	6,694	재난방지
소하천 정비사업	정선읍,여량면	호안정비 L=1.85km	2013년	3,759	재난방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남면 낙동리 군도4호선	피암터널 L=80m	12~14년	4,200	낙석방지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군도7호선 (사북) 도로 안전시설 보강공사	사북읍사북4리 가도교 일원	비탈면 및 절개지사면보강 A=992m ²	2013년	395	토사유출 및 낙석방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차선도색	9개 읍면	차선도색	2013년	391	시선 유도 시설 보강
하수관로정비사업	정선,신동 고한,사북	하수관로 51.02km	2013년	4,896	수질개선 및 침수예방 등

◆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7,927	23,595	29,491	18,233	22,891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단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써 국가재원의 보조없이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가재원의 보조 유무 등이 한 원인이며,
- 또한 타 사업(수해복구 등)으로 위험시설 및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됨.

(7) 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km	천매	km	kl
총계	10.3	0.1	9	1	0.2

[의료시설]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41	45	81	5	395	2
병원	22	29	55	3	395	2
보건소	19	16	26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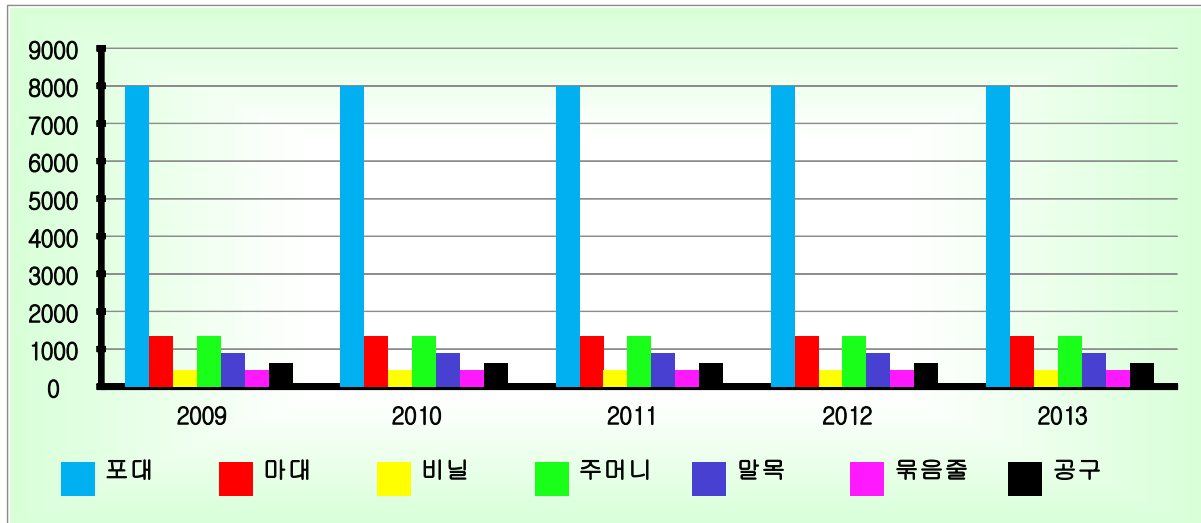
[수용시설]

(2013년)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74	8,220	26	5,650	26	915	11	570	—	—	11	1,085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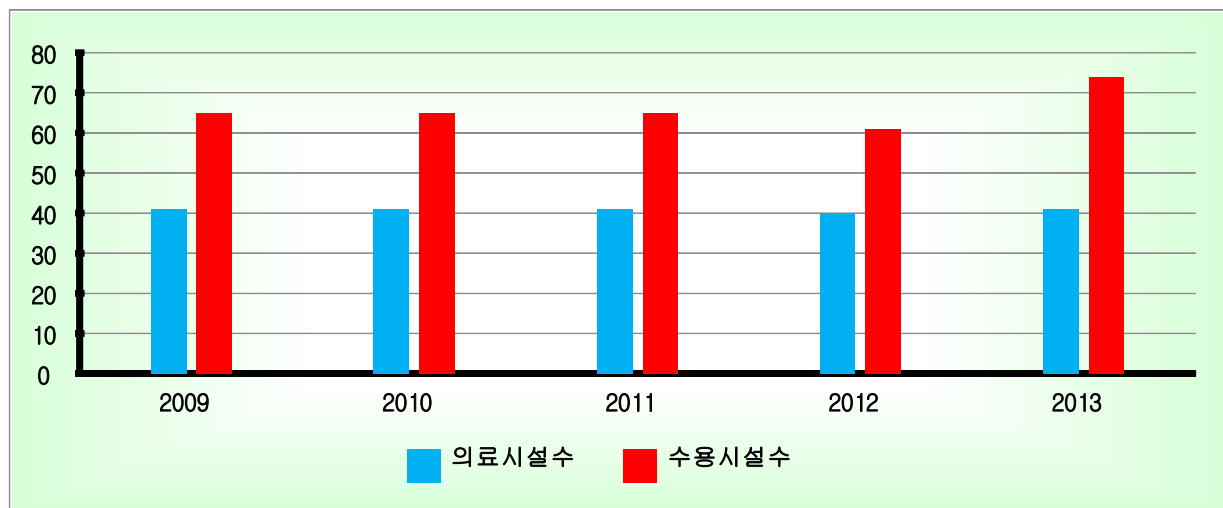
방재물자 종류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마대(40kg)	8,000(읍면별)	8,000(읍면별)	8,000(읍면별)	8,000(읍면별)	8,000(읍면별)
마대(1,000kg)	1,350	1,350	1,350	1,350	1,350
비닐(PE필름)	450	450	450	450	450
흡수성주머니	1,350	1,350	1,350	1,350	1,350
말목	900	900	900	900	900
묶음줄	450	450	450	450	450
작업공구	630	630	630	630	630



- 방재물자의 수량은 매년 각 읍면별 부족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비축량에 맞추어 구입·배분하고 있으며, 상기의 필요한 물품은 예산범위에서 별도 구입·배분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증감원인은 없음.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의료시설수		41	41	41	40	41
수용시설	개소	65	65	65	61	74
	수용인원	7,639	7,639	7,639	7,639	8,220



- 이재민 수용시설의 증감원인은 갈수록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재난 또한 다양하고 대형화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로
- 향후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에 대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추가 지정등이 원인으로 작용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산악구조차	호버크래프트	기타
총계	71	1	1	1	1	67

◆ 복구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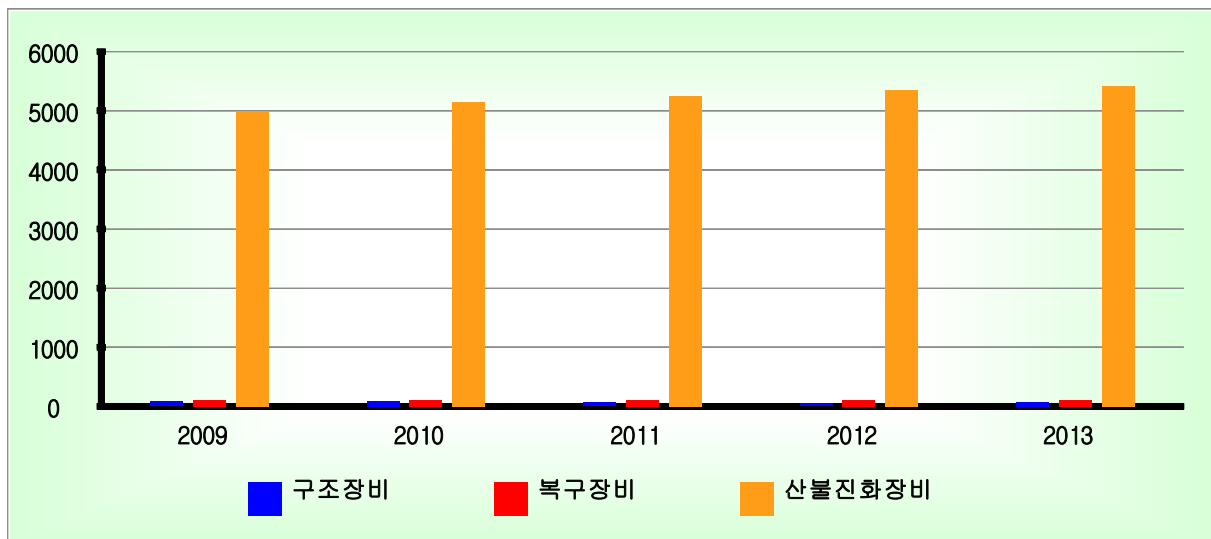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우저	덤프	기타
총계	112	—	58	—	37	17

◆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기타
총계	5,420	—	1	11	16	5,392

◆ 연도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조장비	80	87	69	48	71
복구장비	112	110	112	112	112
산불진화장비	5,000	5,150	5,250	5,350	5,420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은 장비특성상 내구연한에 따른 폐기 및 구입에 따른 수량등의 변동이 원인으로 작용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인원	9	7	2	—	—	—

※ 정선군 NDMS 현황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통신공	중기운전	기타
인원	32	9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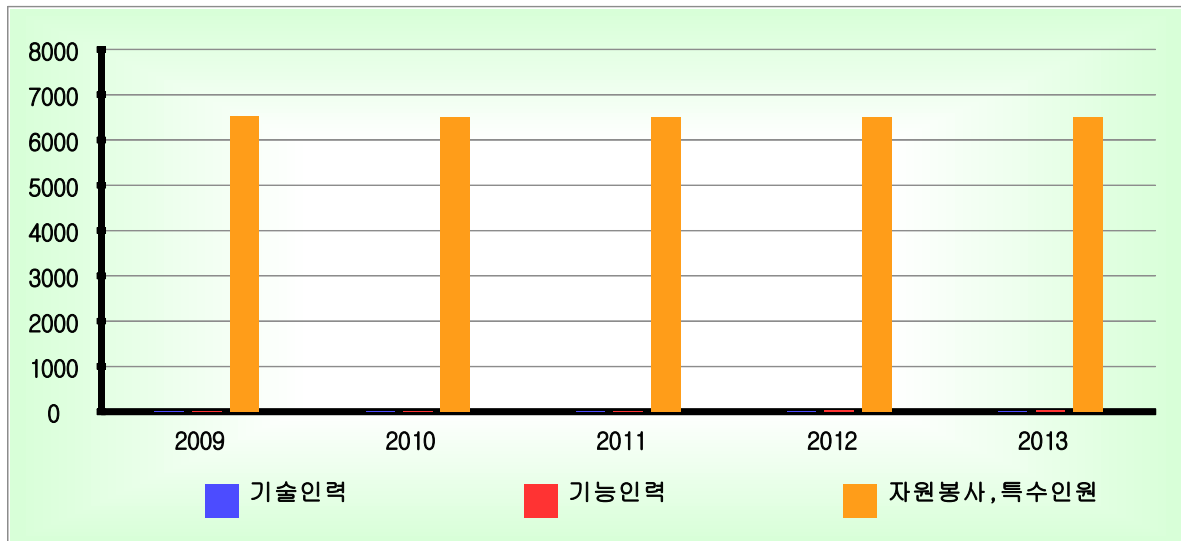
※ 정선군 NDMS 현황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전우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6,469	665	—	14	12	87	341	467	20	73	12	4,778

◆ 연도별 비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술인력	9	9	9	9	9
기능인력	25	25	27	32	32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6,521	6,499	6,510	6,501	6,496



- 인력지정 인원의 증감은 뚜렷하게 변한 것은 없으나, 자원봉사 단체 등의 인원변동 사하에 따라 증감의 원인으로 작용함.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풍수해보험 가입

○ 개 요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제도임.

○ 대상시설물

주택(단독, 공동, 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90%를 각각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

○ 보험료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개인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은 76% 정부지원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험료 산출내역

○ 건축물 ⇨ 소유자, 가입비율 ⇨ 90%일 경우

(단위 : 원)

구 분	21평 (70㎡)	24평 (80㎡)	27평 (90㎡)	30평 (100㎡)
보험가입금액	63,000,000	72,000,000	81,000,000	90,000,000
계	145,500	166,300	187,100	207,900
국고 지원금	70,000	79,900	89,900	99,900
지자체지원금	13,000	14,900	16,800	18,700
주민 부담금	62,500	71,500	80,400	89,300

○ 건축물 ⇨ 소유자, 가입비율 ⇨ 70%일 경우

(단위 : 원)

구 분	21평 (70㎡)	24평 (80㎡)	27평 (90㎡)	30평 (100㎡)
보험가입금액	49,000,000	56,000,000	63,000,000	70,000,000
계	113,200	129,400	145,500	161,700
국고 지원금	59,500	68,000	76,500	85,000
지자체지원금	12,700	14,500	16,300	18,100
주민 부담금	41,000	46,900	52,700	58,600

○ 비닐하우스⇨내재해형07-단동-3, 가입비율⇨90%일 경우

(단위 : 원)

구 분	100평 (330㎡)		50평 (165㎡)	
보험가입금액	5,791,500	5,791,500	2,895,750	2,895,750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계	538,100	448,400	269,000	224,200
국고 지원금	250,800	209,100	125,500	104,600
지자체지원금	45,200	37,600	22,500	18,800
주민 부담금	242,100	209,100	121,000	100,800

○ 비닐하우스⇨내재해형07-단동-3, 가입비율⇨70%일 경우

(단위 : 원)

구 분	100평 (330㎡)		50평 (165㎡)	
보험가입금액	4,504,500	5,791,500	2,895,750	2,252,250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계	418,500	348,800	209,200	174,400
국고 지원금	215,600	179,700	107,900	89,900
지자체지원금	43,900	36,600	21,900	18,300
주민 부담금	159,000	132,500	79,400	66,200

※ 비닐하우스 1동(100평) 제작 설치비 : 800만원

- 100평 비닐 피복비용 : 100만원

③ 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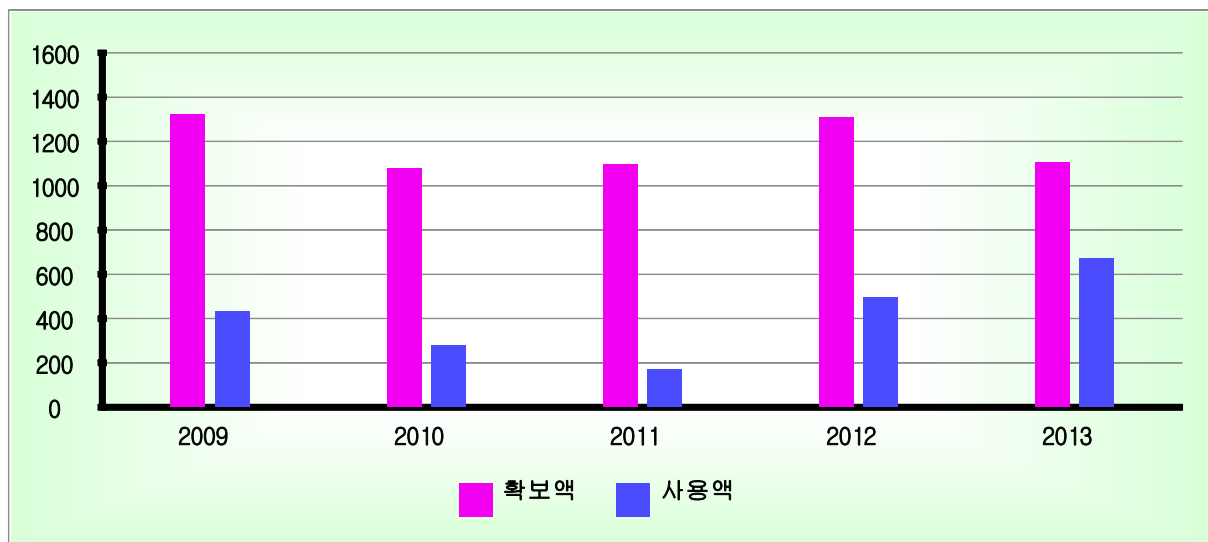
(2013년)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293백만 원	293백만원	293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확보액		1,312	1,076	1,093	1,306	1,103
사용액		434	278	169	495	670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	—	—	—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60	168	—	349	521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138	110	157	107	149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36	—	12	39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	—	—	—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음
-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장기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영제74조의 규정 및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립금액의 증감원인은 보통세 수입액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액의 증감원인으로는 상부기관 기금보조 유무 및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사용액의 증감원인으로 작용함.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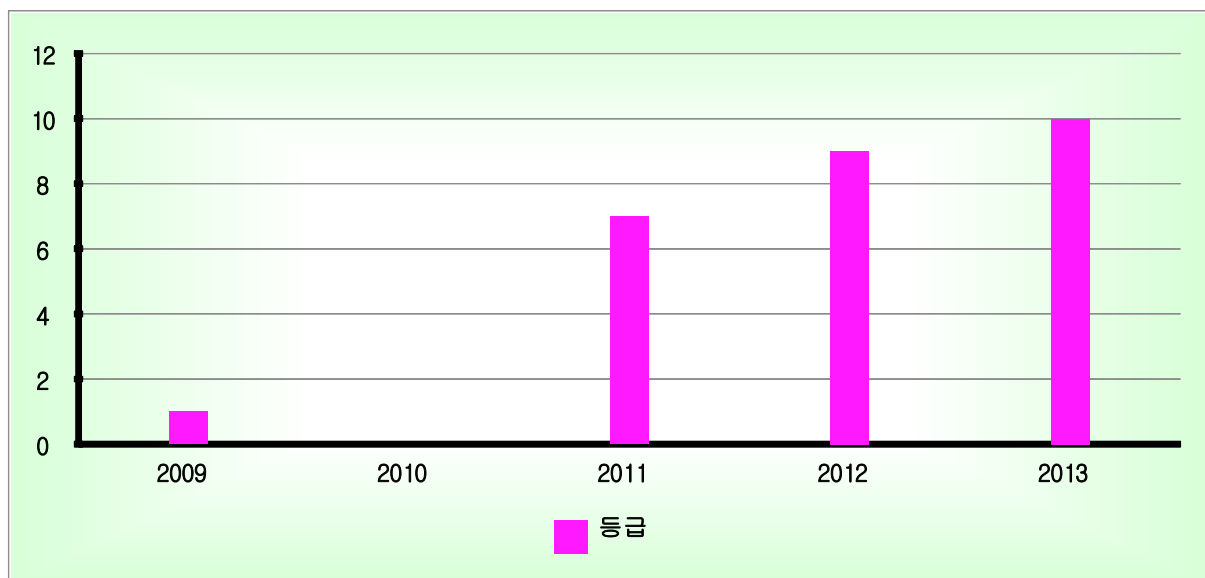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564	0.906	0.3	10(마)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등 급	1등급	진단미실시(전국) (진단체계 개편)	7등급	9등급	10등급



- 지역안전도 진단의 등급 증감원인으로는 2009년도 1등급 진단 후 2010년 진단체계 및 시스템 개편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안전도 진단 미 실시
- 2011년도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는 방재성능 개선실적 (배수펌프장 등 성능개선 등)미비로 인하여 2009년에 비해 지역안전도하락
- 지역안전도 진단은 전년도 진단결과 하위 15% 시군구와 신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12년도에는 하위 15%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13년도에는 진단 미 실시로 인한 등급 자동하락이 원인으로 작용

⑤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3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	28	—	—	—	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부	여	여	
종합상황실	부	여	여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

구 분	2011	2012	2013
내진율	—	—	—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열악한 지방재정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모되고 공공시설물의 이전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등이 수반되어 내진보강에 어려움 발생

[2013년 재난관리 실태평가 결과]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 목 적

-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실태점검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선진재난관리체계 구축

□ 점검대상

-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 주요점검분야 : 자연 및 인적재난 분야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과정 등

□ 점검기간

- 시도 및 시군구 자체점검 : '13.10.11 ~ '13.10.30
- 중앙합동점검 : '13.11.18 ~ '13.11.22

□ 점검결과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도 (14개소)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시·군 (20개소)	전북 완주군	강원 정선군 경북 봉화군	충북 단양군 경남 거창군 경기 광주시 충남 당진시
자치구 *광역시, 군 포함 (10개소)	대전 대덕구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인천 남동구

♣ 공 시 관 련 문 의 사 항 및 의 견 제 출 은 정 선 군 안 전 건 설 과
(담당자 : 전찬우, 전화 : 033)560-249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